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민선7기 핵심사업 추진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총괄

(현행) 1실 12과 1단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1의회

(변경) 1실 14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1의회

나. 과 신설 및 명칭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 가족지원과 신설

(복지업무 증대에 따라 주민복지과 분리)

○ 환경보호과 명칭변경 ⇒ 환경과

(민원인이 알기 쉽게 과명칭을 단순·명료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 명칭변경 ⇒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 전담부서 필요)

다. 농업인 상담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1조)

○ 농업민원 현장 활동 강화를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권역별 농업인상담소 설치 근거 마련

라. 분장사무 이관

현 행	담 당 사 무		이 관
기획감사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업무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과
총 무 과	안전관리담당 업무 전반		안전건설과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장애인자활/여성아동/청소년담당 업무 전반 (※ 자활·의료급여업무 제외)		가족지원과
환경보호과	클린성주담당 업무 전반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	정보관제담당 업무 전반		총 무 과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담당 업무 전반		기업지원과
산 림 과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관리	⇒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하수 업무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관리대상 시설물 이관】 군민화합공원, 가야산오토캠핑장,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시설관리사업소
도시건축과	【관리대상 시설물 이관】 성주역사테마공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 협의

라.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5일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성주군”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실장·과장·단장·소장의 직급 등)”을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실장·과장·단장·소장”을 “실장·과장·소장”으로,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본청”을 삽입한다.

제3조 제목 “(실·과·단의 설치)”를 “(실·과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재무과”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를 “가족지원과, 환경과”로, “새마을체육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을”을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건축과, 산림과, 안전건설과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무
4. 광역행정 관련 업무
5. 공약사항 관리
6.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7. 부서별, 읍·면별 행정실적 분석·평가
8. 각종 지시사항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배정에 관한 업무
10.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11. 기채·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

12.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총괄)
14.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15. 군정홍보 및 보도
16. 공보간행물 발간 배부
17. 여론정보 자료수집
18. 감사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20. 법무행정 및 송무에 관한 사항
21.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22. 행복생활권 계획 총괄
23. 계약원가심사
2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
25. 인구정책전반에 관한 업무
26. 그 밖에 기획감사 및 예산,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서무, 보안,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식 및 행사
4.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6.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7.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후생
8.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9. 군, 의회,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10. 공무원의 인사, 평정, 임용, 표창, 징계
11. 기준인건비 관련업무
12.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행정공제회
13. 여론 파악 및 동향관리
14. 선거 및 국민투표
15.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
16. 읍면 기능전환 업무
17.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8. 행정서비스헌장제

19.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20. 통계(주민등록인구, 국가 주기 통계 등)
21. 학교교육 지원
22. 공립교육원 설립 및 지원
23. 평생교육업무
24.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
25.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6. 정보통신망 운영
27.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8. 지역정보화 관련 업무전반
29. 홈페이지 및 웹메일 운영
30. 정보화 교육
31.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2. 영상회의 시스템 및 행정방송망 운영
33.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센터 운영
34.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3. 지방세 및 국세 위탁 부과·징수
4. 지방세정연감 작성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
5. 지방세 전산망 유지 관리
6. 세무조사 및 지도
7.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8.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9. 세출결산
10. 세입세출의 현금정리
11. 국·도비 재배정분 지출
12.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13. 군 금고의 지도감독
14.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15. 보수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16.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17. 국채소화

18. 실과소, 읍면, 사업소 일상경비 및 국내여비 정산
19. 지방세 및 국세 위탁징수
20.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21. 세입결산, 세외수입의 징수
22.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23. 국·공유 재산의 관리
24. 국·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5. 청사, 관사의 관리
26. 사업소, 읍면 신축 및 대수선 계획 수리 및 추진
27. 그 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문화 행정의 기획조정
3. 축제 종합 기획
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5. 출판, 문화단체 지도육성 및 감독
6.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물제공업 등록관리
7.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관리・운영
8.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9.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10. 관광사업 종합기획
11. 관광자원개발 보호
12. 유원시설 업무
13.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 보존관리
15. 향교, 전통 사찰관리
16. 그 밖에 문화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새마을체육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새마을운동 및 국민운동지원
3. 새마을단체 및 지도자육성
4. 새마을교육 업무
5. 새마을문고 지도육성
6. 바르게 살기운동 업무

7. 환경청결운동
8. 간이화장실 업무에 관한 사항
9. 행락질서 종합 추진
10.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계획 수립
11.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 육성
13.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육성
14. 체육에 관한 업무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15. 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6. 실업팀 운영 및 육성관리
17.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관리
18. 성주군체육회 지원 및 관리
19.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20.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1. 클린성주만들기 사업
2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23. 새마을 시설물 유지 및 관리
24. 면 종합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
25. 포괄사업비 집행(추진)
26. 비법정시설물 및 세천 유지보수
27. 범죄 없는 마을 지정 및 관리
2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29.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 계획수립
30. 시범지역 개발사업
31.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32. 도계정비사업 계획 및 시행
33. 정견대 유지 및 관리
34. 농촌 가로등 관리
35. 그 밖에 새마을체육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⑥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2. FAX민원 업무
3.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전산망 관리 운영

5. 여권발급 업무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7. 민원서류 검열, 수발
8.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처리
9. 외국인 주민 지원 총괄업무
10. 지적전산운영
11. 지적공부 관리
12. 지적측량 검사
13.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업무
14.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
15.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16. 지적기준점 관리
17. 지적 재조사 사업
18.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19. 지명관리위원회 운영지원
20. 토지거래규제 업무
21.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2.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
23.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2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25. 부동산투기 단속업무
26.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27. 도로명주소 사업
28. 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부여
29.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30. 외국인 토지관리 및 권리취득
31. 측량 및 지형·지리공간 정보관리
32. 그 밖에 민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⑦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지원관련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3. 지역복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및 사회복지계획수립
4.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이재민 보호지원
5.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6.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8.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
9.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0.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
11. 희망복지 129센터 및 콜센터 운영
12.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통지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
14.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16. 지역자활센터 운영·지도·감독
17. 의료급여에 관한업무
18.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
19.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⑧ 가족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사업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업무
4. 묘지, 매장, 화장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업무
5. 장애인 복지 증진
6.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7. 장애인관련 단체 운영·지원
8.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9.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10.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 및 시행
11.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2. 드림스타트사업
1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4. 그 밖에 노인복지 및 장애인, 여성아동,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⑨ 환경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5. 토양오염 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망 관리
6. 국립공원관리 업무
7.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8.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9.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항
10. 폐기물처리업(사업장 및 건설) 허가
11.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업 사전 신고
13.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
15. 쓰레기 종량제 업무
16. 재활용품 업무
17. 음식물쓰레기 업무
18.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리
19. 폐기물 관련업체 사후관리
20. 오염총량 관리제 업무
21. 수처리 개선업무 전반
22.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단속
23. 환경관련 인·허가 및 신고민원
24.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및 준공
25. 폐기물관련업 허가 및 신고
26.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27. 석면피해구제 관련 업무
28.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29. 그 밖에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⑩ 농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농업인, 농업법인, 경영조직체 지원 및 관리
3. 군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4.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5. 농지이용계획 조정 관리
6.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7. 농토배양 및 지력 증진
8. 친환경농업육성 관리 지도

9. 농작물재해 대책
10. 농약·판매업 등록 신고 등 관리
11.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구입 사후 관리
12. 유통일반
13. 농산물 유통시설 육성 및 관리
14. 물류표준화사업
15.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
16. 신활력사업 추진(유통분야)
17. 참외지리적 표시제 운영
1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19. 1지역 1명품 및 유통기금 사업
20.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1.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 육성관리
22. 양곡 수매 및 특별회계 운영
23. 부산물 및 헌 포장재 관리
24. 농산물 직거래 추진
25.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26. 경북 우수농산물 관리
27. 농산물직판행사 추진
28. 농관원 업무 협조
29.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30. 전업농 육성
31. 자생 협업단지 조성 및 육성
32. 특용작물 수급 및 생산
33. 화훼산업 육성
34. 지역생산물품의 판로 개척
35. 농산분야 세계각국 교류업무
36. 그 밖에 산업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37.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38. 축산업 구조 및 경영개선 업무
39. 축산단지 조성업무 및 축산 재해 업무
40.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41. 가축 및 축산물 수급 조절
42. 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위생관리 지도

43. 축산물 영업장 등 유통시설 관리, 지도 감독
44. 가축질병 예방·검진 및 동물약품 유통관리
45. 가축위생업무
46. FTA 관련 농산물 분야 종합대책 수립추진
47. 향토산업, 지역특화사업 총괄
48. 지역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운영협의회 운영지원
49. 지역특구사업 추진 및 신규특화발전특구사업 발굴
50. 그 밖에 농정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⑪ 경제교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2. 물가종합대책 수립조정
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
4.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5. 가스안전관리
6.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
7.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
8.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9. 방문판매업 관리
10. 통신판매업 관리
11. 승강기 관리
12. 계량기 및 주유기 관리
13. 주유소 및 유사석유류 관리
14.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
15.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16. 자동차 등록·말소 등 관리업무
17. 법령위반차량 행정처분
18. 자동차보험업무
19.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20.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2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2. 위생업소 종업원 관리
23.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25.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26.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27.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28.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29. 이·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30. 그 밖에 지역경제, 교통, 식품·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⑫ 기업지원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종합기획·조정
3.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4.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5. 산업단지 조성·분양
6.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
7. 산업단지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8.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이관
9.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0.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1.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
12. 기업용지 확보
13. 외국인·법인 투자관리
14. 공산품 품질관리
15.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16.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17. 공장등록관리
18.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업무
19.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20. 노동·노정 및 근로업무
21. 실업대책 업무
22. 직업소개소 및 취업알선사업
23. 행정 및 중소기업 인턴 관리
24. 공공근로사업
25. 일자리 창출
26.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27. 그 밖에 기업지원 업무에 관한사항

⑬ 도시건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기본법 운용 및 지역계획
2.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3.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4. 기반시설부담금법 운용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
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법 운용
7.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8.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운영
9.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
10. 광역교통 기본·관리계획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11. 온천업무
12. 광고물 관리업무
13. 창고업에 관한 업무
14.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15. 주거환경 개선사업
16.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17.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18. 무허가 건축물 단속
19.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20. 건축물대장 관리
21.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22. 그 밖에 도시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

⑭ 산림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 숲 조성
3. 조림 및 산림용 묘목생산, 수급
4.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실행지도
5. 숲 가꾸기 사업
6. 입목벌채허가 및 임산연료 채취지도
7.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8. 산불예방 및 진화
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0.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11. 산림보호구역 보안림 사업허가 및 관리

12. 산림정화 구역 관리
13. 임업기술 보급 및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14.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및 사후관리
15.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수사처리
16. 야생동물보호
17. 수렵면허증 발급관리
18. 야생화 식물원 관리운영 및 증식보급
19. 수목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신고)
20. 임도시설 계획 및 관리
21. 산림소득사업 관리
22.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23.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4. 수목원조성 및 관리
25. 산림휴양 레포츠 조성 및 관리
26. 그 밖에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⑮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토지수용 업무
3. 접도구역 관리
4. 전문건설업 등록 및 면허갱신 등 유지관리
5. 노상적치물 단속
6. 국유재산 관리
7.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 업무
8. 건설기계 등록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9. 방위지원 본부 운영
10.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11.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1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13.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14.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15. 재난상황 종합관리
16.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18. 경지정리사업

19.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
21. 밭 기반정비 사업
22.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3.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24.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5.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
26. 군도개발 사업 및 유지관리
2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8.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지방도로 연결허가
29. 사도개설 허가
30.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및 유지관리
31. 교량관리 업무
32. 교통량조사 및 관리
33. 도로순찰 및 유지 보수
34.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35. 하천종합관리
36.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37. 그 밖에 안전건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삽입한다.

제5조 앞에 “제1절 보건소”를 삽입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8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삽입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삽입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3호사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을 각각 아목부터 하목까지, 거목 및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지하수개발 및 관리업무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4호가목(3) 및 (4)부터 (10)까지를 각각 (5), (8) 및 (9)부터 (1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 (4),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주역사테마공원

(4) 군민화합공원

(6) 가야산오토캠핑장

(7)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제15조 앞에 “제5장 읍·면”을 삽입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을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개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성주군---------- ---------- ---------- ---------- ----------.
제2조(실장・과장・단장・소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단장・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단・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①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 실장・과장・소장 ---------- ------- 실・과・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본청
제3조(실・과・단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새마을체육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을 둔다.	제3조(실・과의 설치) ---------- ----------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건축과, 산림과, 안전건설과를 ----.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무	3.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무
4. 광역행정 관련 업무	4. 광역행정 관련 업무
5. 공약사항 관리	5. 공약사항 관리
6.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6.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7. 부서별, 읍·면별 행정실적 분석·평가	7. 부서별, 읍·면별 행정실적 분석·평가
8. 각종 지시사항 관리	8. 각종 지시사항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배정에 관한 업무	9. 예산의 편성·집행·배정에 관한 업무
10.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10.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11. 기채·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	11. 기채·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
12.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총괄)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총괄)
14.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14.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15. 군정홍보 및 보도	15. 군정홍보 및 보도
16. 공보간행물 발간 배부	16. 공보간행물 발간 배부
17. 여론정보 자료수집	17. 여론정보 자료수집
18. 감사에 관한 사항	18. 감사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20. 법무행정 및 송무에 관한 사항	20. 법무행정 및 송무에 관한 사항
21.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21.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22. 행복생활권 계획 총괄	22. 행복생활권 계획 총괄
23. 계약원가심사	23. 계약원가심사
2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	2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
25. 인구정책전반에 관한 업무	25. 인구정책전반에 관한 업무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26. 그 밖에 기획감사 및 예산,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

2. 서무, 보안,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식 및 행사
4. 방위지원 본부 운영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7.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8.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후생
9.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10.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11.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1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13. 군, 의회,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14. 공무원의 인사, 평정, 임용, 표창, 징계
15. 여론 파악 및 동향관리
16. 총액인건비 관련업무
17. 공무원 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제회, 적십자회비
18. 선거 및 국민투표
19.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
20. 통계(주민등록인구, 국가 주기 통계 등)
21. 학교교육 지원
22. 공립교육원 설립 및 지원
23. 평생교육업무
24.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
25. 읍면 기능전환 업무
26.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27. 행정서비스헌장제
28.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과 같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서무, 보안,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식 및 행사
4.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6.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7.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후생
8.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9. 군, 의회,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10. 공무원의 인사, 평정, 임용, 표창, 징계
11. 기준인건비 관련업무
12.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행정공제회
13. 여론 파악 및 동향관리
14. 선거 및 국민투표
15.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
16. 읍면 기능전환 업무
17.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8. 행정서비스헌장제
19.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20. 통계(주민등록인구, 국가 주기 통계 등)
21. 학교교육 지원
22. 공립교육원 설립 및 지원
23. 평생교육업무
24.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
25.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6. 정보통신망 운영
27.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9.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30.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1. 재난상황 종합관리 32.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33.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3. 지방세 및 국세 위탁 부과·징수 4. 지방세정연감 작성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 5. 지방세 전산망 유지 관리 6. 세무조사 및 지도 7.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8.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9. 세출결산 10. 세입세출의 현금정리 11. 국·도비 재배정분 지출 12.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13. 군 금고의 지도감독 14.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15. 보수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16.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17. 국채소화 18. 실과소, 읍면, 사업소 일상경비 및 국내여비 정산 19. 지방세 및 국세 위탁징수 20.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21. 세입결산, 세외수입의 징수	28. 지역정보화 관련 업무전반 29. 홈페이지 및 웹메일 운영 30. 정보화 교육 31.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2. 영상회의 시스템 및 행정방송망 운영 33.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센터 운영 34.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3. 지방세 및 국세 위탁 부과·징수 4. 지방세정연감 작성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 5. 지방세 전산망 유지 관리 6. 세무조사 및 지도 7.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8.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9. 세출결산 10. 세입세출의 현금정리 11. 국·도비 재배정분 지출 12.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13. 군 금고의 지도감독 14.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15. 보수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16.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17. 국채소화 18. 실과소, 읍면, 사업소 일상경비 및 국내여비 정산

22.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23. 국공유 재산의 관리
24. 국·공유 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25. 청사, 관사의 관리
26. 사업소, 읍면 신축 및 대수선 계획 수리 및 추진
27.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2. FAX민원 업무
3.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전산망 관리 운영
5. 여권발급 업무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7. 민원서류 검열, 수발
8.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처리
9. 외국인 주민 지원 총괄업무
10. 지적전산운영
11. 지적공부 관리
12. 지적측량 검사
13.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업무
14.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
15.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16. 지적기준점 관리
17. 지적 재조사 사업
18.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19. 지명관리위원회 운영지원
20. 토지거래규제 업무
21.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2.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23. 국공유 재산의 관리
24. 국·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5. 청사, 관사의 관리
26. 사업소, 읍면 신축 및 대수선 계획 수리 및 추진
27.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문화 행정의 기획조정
3. 축제 종합 기획
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5. 출판, 문화단체 지도육성 및 감독
6.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물제공업 등록관리
7.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관리·운영
8.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9.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10. 관광사업 종합기획
11. 관광자원개발 보호
12. 유원시설 업무
13.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 보존관리
15. 향교, 전통 사찰관리
16. 그 밖에 문화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22.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
23.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2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25. 부동산투기 단속업무
26.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27. 도로명주소 사업
28. 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부여
29.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30. 외국인 토지관리 및 권리취득
31. 측량 및 지형·지리공간 정보관리
32. 그밖에 민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⑤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지원관련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3. 지역복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및 사회복지계획수립
4.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이재민 보호지원
5.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6.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8.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
9.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0. 희망복지 129센터 및 콜센터 운영
11.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통지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

⑤ 새마을체육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새마을운동 및 국민운동지원
3. 새마을단체 및 지도자육성
4. 새마을교육 업무
5. 새마을문고 지도육성
6. 바르게 살기운동 업무
7. 환경청결운동
8. 간이화장실 업무에 관한 사항
9. 행락질서 종합 추진
10.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계획 수립
11.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 육성
13.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육성
14. 체육에 관한 업무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15. 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6. 실업팀 운영 및 육성관리
17.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관리
18. 성주군체육회 지원 및 관리
19.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20.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1. 클린성주만들기 사업
2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23. 새마을 시설물 유지 및 관리
24. 면 종합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
25. 포괄사업비 집행(추진)
26. 비법정시설물 및 세천 유지보수
27. 범죄 없는 마을 지정 및 관리
2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13.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역자활센터 운영·지도·감독
15. 의료급여에 관한업무
16.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
1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8.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사업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업무
20. 묘지, 매장, 화장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업무
21.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
22. 장애인 복지 증진
23.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24. 장애인관련단체 운영·지원
25.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26.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2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28.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시행
29.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0. 드림스타트사업
3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2. 그 밖의 주민복지 및 여성아동,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⑥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문화 행정의 기획조정
3.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4. 출판, 문화단체 지도육성 및 감독
29.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 계획수립
30. 시범지역 개발사업
31.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32. 도계정비사업 계획 및 시행
33. 정견대 유지 및 관리
34. 농촌 가로등 관리
35. 그 밖에 새마을체육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⑥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2. FAX민원 업무
3.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전산망 관리 운영
5. 여권발급 업무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7. 민원서류 검열, 수발
8.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처리
9. 외국인 주민 지원 총괄업무
10. 지적전산운영
11. 지적공부 관리
12. 지적측량 검사
13.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업무
14.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
15.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16. 지적기준점 관리
17. 지적 재조사 사업
18.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19. 지명관리위원회 운영지원
20. 토지거래규제 업무
21.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2.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

5.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체육관 관리·운영
6. 문화재 보존관리
7. 향교, 전통 사찰관리
8. 관광사업 종합기획
9. 관광자원개발 보호
10. 축제 종합 기획
11. 유원시설 업무
12.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물제공업 등록관리
13.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14.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15. 그 밖의 문화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⑦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5. 토양오염 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망 관리
6. 국립공원관리 업무
7.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8.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9.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10. 폐기물처리업(사업장 및 건설) 허가
11.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업 사전 신고
13.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2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25. 부동산투기 단속업무
26.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27. 도로명주소 사업
28. 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부여
29.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30. 외국인 토지관리 및 권리취득
31. 측량 및 지형·지리공간 정보관리
32. 그 밖에 민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⑦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지원관련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3. 지역복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및 사회복지계획수립
4.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이재민 보호지원
5.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6.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8.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
9.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0.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
11. 희망복지 129센터 및 콜센터 운영
12.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통지
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14.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
15. 쓰레기 종량제 업무
16. 재활용품 업무
17. 음식물쓰레기 업무
18.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리
19. 폐기물 관련업체 사후관리
20. 클린성주만들기 사업
21. 오염총량 관리제 업무
22. 수처리 개선업무 전반
23.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단속
24. 환경관련 인·허가 및 신고민원
25.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및 준공
26. 폐기물관련업 허가 및 신고
27.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28. 석면피해구제 관련 업무
29.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30. 그 밖의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⑧ 농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농업인, 농업법인, 경영조직체 지원 및 관리
3. 군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4.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5. 농지이용계획 조정 관리
6.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7. 농토배양 및 지력 증진
8. 친환경농업육성 관리 지도
9. 농작물재해 대책
10. 농약·판매업 등록 신고 등 관리
11.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구입 사후 급여지원
14.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16. 지역자활센터 운영·지도·감독
17. 의료급여에 관한업무
18.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
19. 그 밖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⑧ 가족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사업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업무
4. 묘지, 매장, 화장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업무
5. 장애인 복지 증진
6.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7. 장애인관련 단체 운영·지원
8.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9.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10.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 및 시행
11.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2. 드림스타트사업
1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4. 그 밖에 노인복지 및 장애인, 여성아동,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⑨ 환경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관리
12. 유통일반
13. 농산물 유통시설 육성 및 관리)
14. 물류표준화사업
15.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
16. 신활력사업 추진(유통분야)
17. 참외지리적 표시제 운영
1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19. 1지역 1명품 및 유통기금 사업
20.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1.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 육성관리
22. 양곡 수매 및 특별회계 운영
23. 부산물 및 헌 포장재 관리
24. 농산물 직거래 추진
25.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26. 경북 우수농산물 관리
27. 농산물직판행사 추진
28. 농관원 업무 협조
29.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30. 전업농 육성
31. 자생 협업단지 조성 및 육성
32. 특용작물 수급 및 생산
33. 화훼산업 육성
34. 지역생산물품의 판로 개척
35. 농산분야 세계각국 교류업무
36. 기타 산업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37.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38. 축산업 구조 및 경영개선 업무
39. 축산단지 조성업무 및 축산 재해업무
40.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41. 가축 및 축산물 수급 조절

2.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5. 토양오염 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망 관리
6. 국립공원관리 업무
7.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8.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9.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항
10. 폐기물처리업(사업장 및 건설) 허가
11.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업 사전 신고
13.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
15. 쓰레기 종량제 업무
16. 재활용품 업무
17. 음식물쓰레기 업무
18.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리
19. 폐기물 관련업체 사후관리
20. 오염총량 관리제 업무
21. 수처리 개선업무 전반
22.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단속
23. 환경관련 인·허가 및 신고민원
24.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및 준공
25. 폐기물관련업 허가 및 신고
26.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27. 석면피해구제 관련 업무
28.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42. 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위생관리 지도
43. 축산물 영업장 등 유통시설 관리, 지도 감독
44. 가축질병 예방·검진 및 동물약품 유통관리
45. 가축위생업무
46. FTA 관련 농산물 분야 종합대책 수립추진
47. 향토산업, 지역특화사업 총괄
48. 지역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운영협의회 운영지원
49. 지역특구사업 추진 및 신규특화발전특구사업 발굴
50. 그 밖의 농정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⑨ 새마을체육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새마을운동 및 국민운동지원
3. 새마을단체 및 지도자육성
4. 새마을교육 업무
5. 새마을금고, 문고 지도육성
6. 바르게 살기운동 업무
7. 환경청결운동
8. 행락질서 종합 추진
9.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계획 수립
10.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 육성
12.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육성
1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14. 새마을 시설물 유지 및 관리
29. 그 밖에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⑩ 농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농업인, 농업법인, 경영조직체 지원 및 관리
3. 군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4.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5. 농지이용계획 조정 관리
6.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7. 농토배양 및 지력 증진
8. 친환경농업육성 관리 지도
9. 농작물재해 대책
10. 농약·판매업 등록 신고 등 관리
11.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구입 사후관리
12. 유통일반
13. 농산물 유통시설 육성 및 관리
14. 물류표준화사업
15.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
16. 신활력사업 추진(유통분야)
17. 참외지리적 표시제 운영
1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19. 1지역 1명품 및 유통기금 사업
20.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1.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 육성관리
22. 양곡 수매 및 특별회계 운영
23. 부산물 및 헌 포장재 관리
24. 농산물 직거래 추진
25.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26. 경북 우수농산물 관리

15. 면 종합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
16. 포괄사업비 집행(추진)
17. 비법정시설물 및 세천 유지보수
18. 범죄 없는 마을 지정 및 관리
1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20.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 계획수립
21. 시범지역 개발사업
22.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23. 도계정비사업 계획 및 시행
24. 정견대 유지 및 관리
25. 농촌 가로등 관리
26. 체육에 관한 업무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27. 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8. 실업팀 운영 및 육성관리
29.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관리
30. 성주군체육회 지원 및 관리
31.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32.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3. 정보통신망 운영
34.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35. 지역정보호 관련 업무전반
36. 홈페이지 및 웹메일 운영
37. 정보화 교육
38.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9. 영상회의 시스템 및 행정방송망 운영
40.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센터 운영
41. 그 밖의 새마을개발 및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⑩ 경제교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27. 농산물직판행사 추진
28. 농관원 업무 협조
29.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30. 전업농 육성
31. 자생 협업단지 조성 및 육성
32. 특용작물 수급 및 생산
33. 화훼산업 육성
34. 지역생산물품의 판로 개척
35. 농산분야 세계각국 교류업무
36. 그 밖에 산업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37.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38. 축산업 구조 및 경영개선 업무
39. 축산단지 조성업무 및 축산 재해업무
40.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41. 가축 및 축산물 수급 조절
42. 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위생관리 지도
43. 축산물 영업장 등 유통시설 관리, 지도 감독
44. 가축질병 예방·검진 및 동물약품 유통관리
45. 가축위생업무
46. FTA 관련 농산물 분야 종합대책 수립추진
47. 향토산업, 지역특화사업 총괄
48. 지역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운영협의회 운영지원
49. 지역특구사업 추진 및 신규특화발전특구사업 발굴
50. 그 밖에 농정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⑪ 경제교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2. 물가종합대책 수립조정	2. 물가종합대책 수립조정
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	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
4.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4.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5. 가스안전관리	5. 가스안전관리
6. 노동·노정 및 근로업무	6.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
7. 실업대책 업무	7.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
8.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	8.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9.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	9. 방문판매업 관리
10.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10. 통신판매업 관리
11. 방문판매업 관리	11. 승강기 관리
12. 통신판매업 관리	12. 계량기 및 주유기 관리
13. 승강기 관리	13. 주유소 및 유사석유류 관리
14. 계량기 및 주유기 관리	14.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
15. 주유소 및 유사석유류 관리	15.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16. 직업소개소 및 취업알선사업	16. 자동차 등록·말소 등 관리업무
17. 행정 및 중소기업 인턴 관리	17. 법령위반차량 행정처분
18. 공공근로사업	18. 자동차보험업무
19. 일자리 창출	19.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20.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20.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2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	2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2.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22. 위생업소 종업원 관리
23. 자동차 등록·말소 등 관리업무	23.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4. 법령위반차량 행정처분	24.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25. 자동차보험업무	25.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26.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26.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27.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27.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28.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9. 위생업소 종업원 관리
30.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1.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32.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33.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34.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35.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36. 이·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37. 그 밖의 지역경제, 교통, 식품·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⑪ 도시건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기본법 운용 및 지역계획
2.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3.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4. 기반시설부담금법 운용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
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법 운용
7.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8.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운영
9.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
10. 광역교통 기본·관리계획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11. 온천업무
12. 광고물 관리업무
13. 창고업에 관한 업무
14.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28.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29. 이·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30. 그 밖에 지역경제, 교통, 식품·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⑫ 기업지원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종합기획·조정
3.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4.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5. 산업단지 조성·분양
6.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
7. 산업단지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8.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이관
9.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0.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1.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
12. 기업용지 확보
13. 외국인·법인 투자관리
14. 공산품 품질관리
15.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16.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17. 공장등록관리
18.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업무
19.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20. 노동·노정 및 근로업무
21. 실업대책 업무

15. 주거환경 개선사업
16.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17.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18. 무허가 건축물 단속
19.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20. 건축물대장 관리
21.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⑫ 산림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 숲 조성
3. 조림 및 산림용 묘목생산, 수급
4.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실행지도
5. 숲 가꾸기 사업
6. 입목벌채허가 및 임산연료 채취지도
7.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8. 산불예방 및 진화
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0.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11. 산림보호구역 보안림 사업허가 및 관리
12. 산림정화 구역 관리
13. 임업기술 보급 및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14.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및 사후관리
15.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수사처리
16. 야생동물보호
17. 수렵면허증 발급관리
18. 야생화 식물원 관리운영 및 증식
22. 직업소개소 및 취업알선사업
23. 행정 및 중소기업 인턴 관리
24. 공공근로사업
25. 일자리 창출
26.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27. 그 밖에 기업지원 업무에 관한사항

⑬ 도시건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기본법 운용 및 지역계획
2.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3.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4. 기반시설부담금법 운용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
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법 운용
7.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8.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운영
9.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
10. 광역교통 기본・관리계획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11. 온천업무
12. 광고물 관리업무
13. 창고업에 관한 업무
14.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15. 주거환경 개선사업
16.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17.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18. 무허가 건축물 단속
19.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보급
19. 사회적일자리 창출(공공근로)사업
20. 수목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신고)
21. 임도시설 계획 및 관리
22. 산림소득사업 관리
23.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24.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5. 수목원조성 및 관리
26. 산림휴양 레포츠 조성 및 관리
27.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8.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⑬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토지수용 업무
3. 접도구역 관리
4. 전문건설업 등록 및 면허갱신 등 유지관리
5. 노상적치물 단속
6. 국유재산 관리
7. 지하수개발 및 관리
8.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 업무
9. 건설기계 등록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10. 경지정리사업
1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
13. 밭 기반정비 사업
1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 건축물대장 관리
21.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22. 그 밖에 도시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

⑭ 산림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 숲 조성
3. 조림 및 산림용 묘목생산, 수급
4.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실행지도
5. 숲 가꾸기 사업
6. 입목벌채허가 및 임산연료 채취지도
7.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8. 산불예방 및 진화
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0.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11. 산림보호구역 보안림 사업허가 및 관리
12. 산림정화 구역 관리
13. 임업기술 보급 및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14.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및 사후관리
15.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수사처리
16. 야생동물보호
17. 수렵면허증 발급관리
18. 야생화 식물원 관리운영 및 증식보급
19. 수목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신고)
20. 임도시설 계획 및 관리

15.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16.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
18. 군도개발 사업 및 유지관리
1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지방도로 연결허가
21. 사도개설 허가
22.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및 유지관리
23. 교량관리 업무
24. 교통량조사 및 관리
25. 도로순찰 및 유지 보수
26.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27. 하천종합관리
28.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29. 그 밖의 안전건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⑭ 산업단지개발추진단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종합기획·조정
3.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4.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5. 산업단지 조성·분양
6.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
7. 산업단지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8.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이관
9.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1. 산림소득사업 관리
22.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23.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4. 수목원조성 및 관리
25. 산림휴양 레포츠 조성 및 관리
26. 그 밖에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⑮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토지수용 업무
3. 접도구역 관리
4. 전문건설업 등록 및 면허갱신 등 유지관리
5. 노상적치물 단속
6. 국유재산 관리
7.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 업무
8. 건설기계 등록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9. 방위지원 본부 운영
10.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11.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1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13.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14.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15. 재난상황 종합관리
16.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18. 경지정리사업
19.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

10.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개선 사업
11.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	21. 밭 기반정비 사업
12. 기업용지 확보	22.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 외국인.법인 투자관리	23.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14. 공산품 품질관리	24.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25.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
16.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26. 군도개발 사업 및 유지관리
17. 공장등록관리	2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8.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업무	28.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지방도로 연결허가
19.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29. 사도개설 허가
20. 그 밖의 산업단지개발에 관한사항	30.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및 유지관리
	31. 교량관리 업무
	32. 교통량조사 및 관리
	33. 도로순찰 및 유지 보수
	34.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35. 하천종합관리
	36.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37. 그 밖에 안전건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신 설>	제1절 보건소
제5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제5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제7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	제7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

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건법」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설치) ①영 제11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교육 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장 사업소
제11조·제12조 (생 략)	제12조·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소관사무)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하수도사업소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지하수개발 및 관리업무

사. ~ 거. (생 략)	아. ~ 너. (현행 사목부터 거목까지와 같음)
4. 시설관리사업소	4. ----------
가. 관리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성주역사테마공원
<신 설>	(4) 군민화합공원
(3) (생 략)	(5) (현행 (3)과 같음)
<신 설>	(6) 가야산오토캠핑장
(4) ~ (6) (생 략)	(8) ~ (10) (현행 (4)부터 (6)까지와 같음)
<신 설>	(7) 금수문화공원야영장
(7) ~ (10) (생 략)	(11) ~ (14) (현행 (7)부터 (10)까지와 같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읍·면
제14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제15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제16조 (생 략)	제16조·제17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